

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[별표 4]

계기비정밀접근 및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
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(제3조제3항제2호 관련)

활주로 등급	경 사 도
D	40분의 1
E, F	4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로서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경사도
G	25분의 1